#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·공용물건 손상

[부산지방법원 2012. 10. 19. 2012노2164]



#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항 소 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오재현(기소), 전현민(공판)

【변호인】 공익법무관 김기태

【원심판결】 부산지방법원 2012. 6. 29. 선고 2012고단3765 판결

#### 【주문】

1

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.

### [이유]

# 】 1. 항소이유의 요지

가.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 부분]

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·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(일명 '필로폰', 이하 '필로폰'이라고 한다)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{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의 감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·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성불상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건네준 커피 속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이를 마셨기 때문(즉, 성불상 공소외 2로부터 속칭 '몰래뽕'을 당한 것)임에도 불구하고}, 원심은 그와 달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,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.

#### 나. 양형부당의 점

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(징역 1년 6월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### 2. 판단

가.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

살피건대,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·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,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·장소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,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성불상 공소외 2로부터 속칭 '몰래뽕'을 당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.

#### 나.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

살피건대,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,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로 수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, 특히, 피고인이 2009. 1. 20.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. 2. 19.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행을 저지른 점,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후 그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치장 출입문을 걷어차 이를 손괴한 것으로, 그 경위와 내용, 수단과 방법 및 결과,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,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, 범행 후의 정황, 가족관계,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,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,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.

# 3. 결론

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주호(재판장) 김경수 권주연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